

의안
번호

411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
위한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19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경이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411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2.. 3.

라. 회부일자 : 2025. 2.. 10.

2. 제안이유

-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의 편리성은 높아졌지만,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의 접근과 활용 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.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·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추진사업과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홍보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2. 6. ~ 2025. 2. 12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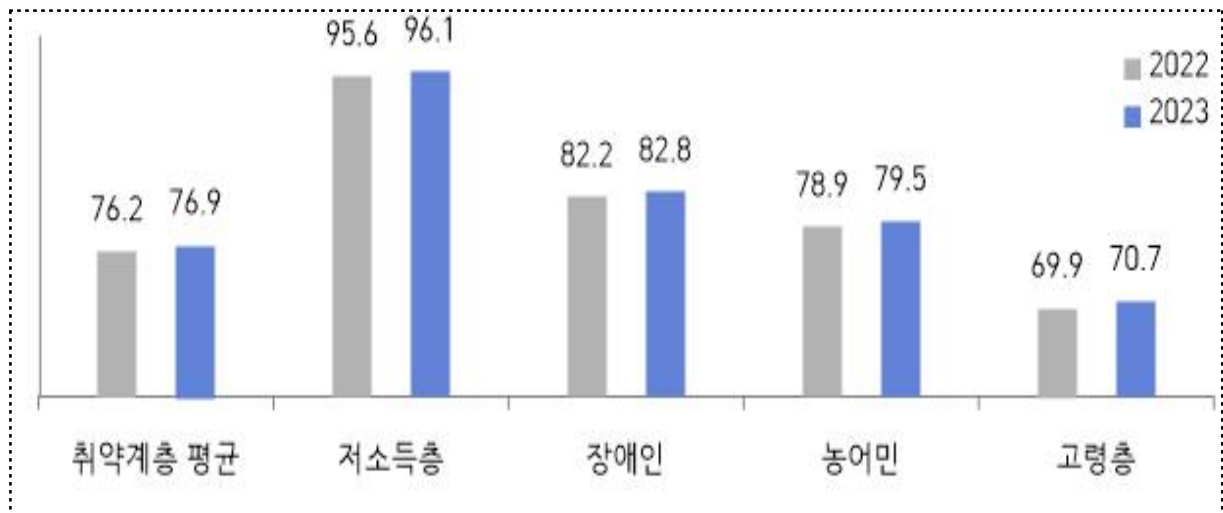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“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”에 따르면 장애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82.8%로 일반국민 정보화 수준 100%에 비하여 취약함

<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수준 >



※ 2023년 4대 정보취약 계층(장애인·저소득층·농어민·고령층)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6.9%로 2022년 76.2% 대비 0.7%p 상승

※ 각 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

(자료출처 : 2023 인터넷이용 실태조사(과학기술정보통신부))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

-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,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.

나.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-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.

다. 안 제5조(실태조사), 안 제6조(실행계획의 수립)

-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라. 안 제7조(추진사업)

- 장애인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사업, 지능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마. 안 제8조(민간위탁 및 지원)

-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·운영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사무 위탁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.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신체적·인지적 제약 등의 불편함 없이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를 제고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조례제정의 취지나 내용이 적절함.

□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5조, 제46조 및 제50조

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6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~3. (생략)

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정보화 관련법 외의 관계 법령(별첨1)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2조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
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, 구화,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. 28., 2016. 2. 3., 2017. 12. 19.>

○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접근권)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